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52-1
----------	--------

제안연월일 : 2025. 9. .
제안자 : 오승철 의원

1. 수정이유

- 원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및 감독반의 구성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감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로,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

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2항제3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감독 신청)”을 “(감독의 신청)”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2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을 각하하고 감독”을 “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하”를 “그”로, “각하 결정을”을 “문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하 결정을”을 “미지정 사유를”로, “각하 사유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을 “해당 사정이 변경된”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를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조례 제4조제2항”을 “조례 제5조제2항”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으로써 <u>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6조의5----- ----- ----- <u>규정함</u>----- ----- ----- ----- -----</p>
<p>제2조(시장의 책무) <u>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집합건물 관계인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분소유자”란 「<u>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u>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u>를 말한다.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u>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u></p>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u>구조·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u></p>

에 따른 감독의 실시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중지 사항을
관리인, 대표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
다.

제8조-----

--.